

"현장에 답이 있다!" 보육특별시, 서울의 효과적인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24. 10. 11.(금) 14:00-16:00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보육특별시,
서울의 효과적인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

서울시 성공적인 유보통합 방안 모색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교수

서울시 성공적인 유보통합 방안 모색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교수

서울시 성공적인 유보통합 방안 모색

김혜금(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유보통합과 교육/보육재정
3. 유보통합과 재정이관
4. 서울시 교육/보육 현황
5.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6. 나가며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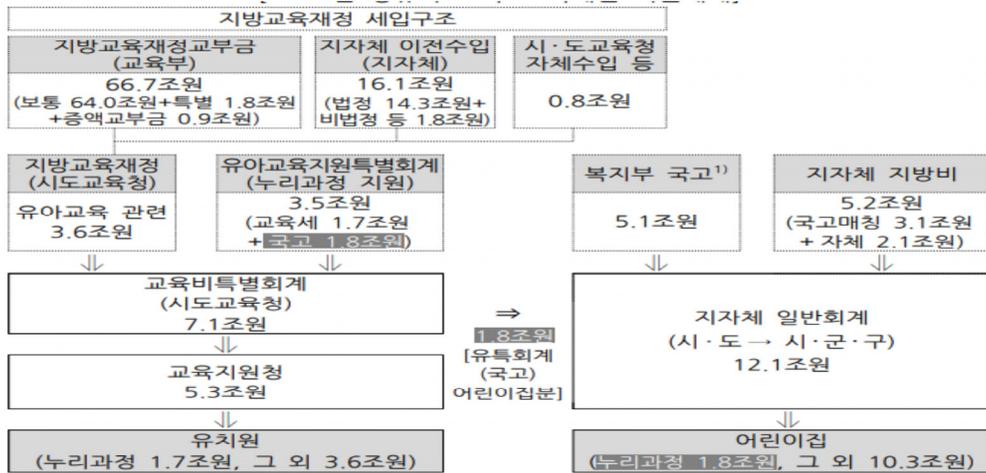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23.7.28)이 발표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2024년 6월 27일부터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그리고 지자체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의 길로 접어들었음.**
- **유보통합 관건은 재정 확보에 있음. 유보통합을 위한 자원 소요 규모는 19조 2,000억원 정도로 현재보다 최소 2조원 이상 더 필요한 상황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최소 1.5조원,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에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국회예산정책처, 2024).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 2023년 영유아 교육/보육예산 지원체계



주: 1. 음영처리된 부분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중 국고(어린이집 분)임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육예산 국고분이 2024.6.27.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4).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1. 들어가며

- 2024년 8월 27일 편성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유보통합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넘겨 받는 보육사업 국고 5조 3,714억원만 편성되어 있을 뿐 복지부 국고 외 나머지 교육부 예산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유보통합 예산은 확정되지 않음. 각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보육사업 예산 규모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용할 비율이 정해지지 않음(경향신문, 2024.08.27).
- 당장 내년도 유보통합 예산 뿐 아니라 유보통합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유보통합 예산을 추산해야 함. 이를 통해 체계적인 유보통합 추진이 가능함.
-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은 복지부 국고 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등으로 구성됨.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1. 들어가며

- 유보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은 질 높은 유보통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분담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유보통합 경비 중 일부는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측면에서 국고부담으로 해야 함. 그리고 지자체는 기존 보육예산(매칭예산 및 특수시책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전 또는 지속부담해야 한다(김병주, 2024)는 의견이 있음.
-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2항의 법정 전입금 조항을 개정하거나 제15조에 유보통합 특례규정을 신설해 재정 이관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8조 8항에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비 이관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한치원, 2024.06.01).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1. 들어가며

-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고보조 대응사업비로 부담해온 기존 3조원을 지자체가 아닌 국고에서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짐. 다만 3~5년에 안에 일몰을 전제로 국고보조 대응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함. 유보통합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3~5년 동안만 국고보조 대응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다음부터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음(윤근혁, 2024.09.24).
- 국회예산정책처는 유보통합 관련 교육부 의견은 지자체 지원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해 지속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봄.그러나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인 사업으로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2조원 가량의 특수보육시책 사업의 이관을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음(국회예산정책처, 2024).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1. 들어가며

- **특수보육시책 사업은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자체가 정책목표 및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함. 특수보육시책은 중앙정부 예산만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성격이 강함** (김이배, 2023).
- 지자체 특수시책사업의 예시를 들어보면, **서울시의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AI 활용보육 등 특화보육 개발** 등이 있으며, **인천시의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사업, 혁신육아복합센터** 등 지역사회에 맞추어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있음.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1. 들어가며

- **서울 내 영유아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인력은 400명, 시청의 경우 30명으로 총 430여명임.** 현재 교육청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유보통합 추진단 인력 10여명임.** 또한 **시책사업이 국고 지원 정책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함**(유호송, 2024.07.28).
- 이에 본 발제자는 서울시의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하여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이관에 대해 살펴보면서 서울시 특수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10 2. 유보통합과 교육/보육재정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과 관련된 법임.
- 현재 유치원 관련 재정과 직접적 연관을 가진 법령이며 해당 법안은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등 이상의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전체를 포괄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6년 12월 20일 제정됨.
-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취학전 3년의 유아(3-5세 유아)의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법안으로 전액 국고로 운영됨.
- 3년 한시 법안으로, 2017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번 연장되었으며 2025년까지 유효한 법안임.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가. 유아교육 재정

- 유아교육 재원은 유아교육진흥과 누리과정지원 예산에 국한됨. 유아교육진흥 예산에는 유아교육 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교육 여건개선,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이 포함됨. 누리과정지원 예산은 「유아교육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포함됨.
- 유초 예산에 포함된 유아교육 예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개용 자료는 부재함. 향후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유초 예산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유아교육 예산을 초등 예산과 구분하여 운영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최효미, 2023).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나. 보육 재정

- 유아교육 재정에 비해 **보육 재정은 복잡한 구조**를 지님. 보육 재정은 사회복지 지출 중 보육·가족·여성 부분 예산의 일부분으로, 보육 예산 중에서도 가정양육 관련 사업 예산이나 취약 가구(아동) 지원 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관련 보육 예산(이하 보육 예산)을 산출할 수 있음.
- **보육 예산은 크게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과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으로 구분됨.**

* 특수보육시책사업

- 특수보육시책은 중앙정부 예산만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성격이 강함.**
- 유보통합 이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자체 사업의 경우, ①**교육청이 새롭게 지원(예산수립)**을 하거나, ②**기존 시/군/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3. 유보통합과 재정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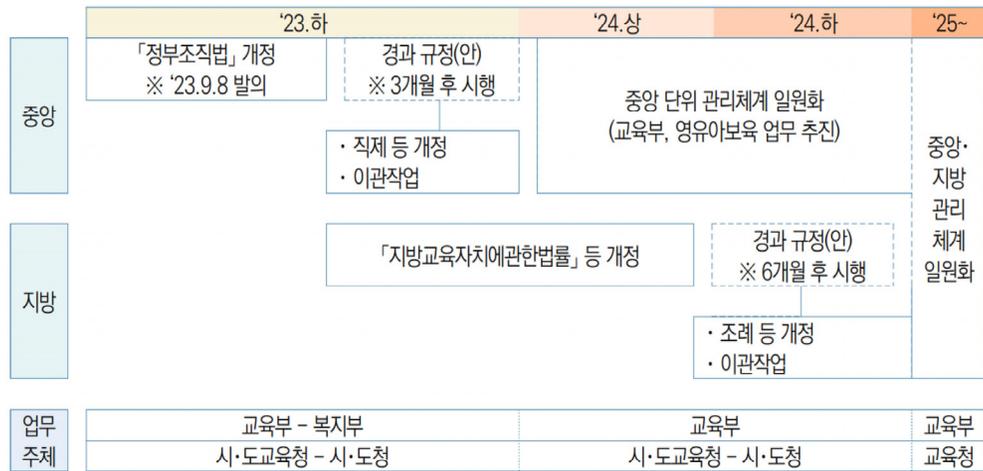


1) 재정이관 단계

- 예산의 지속 지원 및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 원칙 준수
-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1·2단계) 시 재정은 ‘이관’ 하며, 이후 통합모델(’ 23.12월 시안공개, ’ 24년 말 확정) 적용 시 재정 개편 추진

〈현행〉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비고
현황('23)	이관·지원 방향	개편 방향	
① 복지부 국고	① 교육부로 이관 [1단계]	①+② 별도 특별회계* 신설 검토	특별회계신설
② 유특회계	② 지속 지원(~'25)	*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③ 시도, 시군구 예산	→ ③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2단계]	→ ③ 이관 후 지속 지원	유지
④ 시도교육청 예산	④ 지속 지원	④ 지속 지원	
		⑤ 통합모델 적용에 따라 교부금 등 활용 추진	+α (추가소요)

1) 재정이관 단계



출처: 김이매(2023).

1) 재정이관 단계

- 1단계: 중앙)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소관 변경)
- 2단계: 지방)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으로 이관(법률에 근거 명시)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 사업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 여부 등) 등에 따라 이관 범위 결정

※ 세부 이관범위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지역협의회(TF) 논의 등을 통해 결정

출처: 김이매(2023).

2) 재정이관 문제점

-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로 진행되는 **국비 사업**, 국비와 지자체가 같이 부담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지자체 **특수시책**으로 구분됨.
- 어린이집 중앙정부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업**임. 보건복지부 소관의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국고보조금으로 지자체에 지원되며, 국고보조금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대응투자를 하도록 규정됨.
- 지자체 특수시책은 시·도 및 시·군·구 예산에서 해당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자체사업임.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2) 재정이관 문제점

국고 보조금 사업의 보조사업자와 부담주체는?

- 현행 법령 체계상 어린이집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담 주체(보조사업자)는 지자체임. 업무가 이관되고 중앙부처가 교육부로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더 이상 보조사업자가 아님. -> 추후 의무 부담 주체?
- 유보통합 초기단계에서는 보조사업자(업무 수행 주체) 여부와 무관하게 국고 대응투자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누가 의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 개정이 요구됨.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2) 재정이관 문제점

특수보육시책의 이관 범위 및 의무 부담은?

- 지자체 입장에서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은 지방자치 영역의 사안으로 중앙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음. 보육 업무가 더 이상 지자체의 업무가 아닌 상황에서는 해당 자원 조달은 국고(중앙정부) 혹은 교육자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함.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입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이 모두 이관되지 않은 채 업무만 전부 이관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음.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2) 재정이관 문제점

- 특수보육시책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이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영유아교육·보육추진단은 특수보육시책 사업의 필수적 경비 유무 등을 파악하여 이관 범위를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특수보육시책 사업 중 필수적 경비를 가려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
- 또한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은 지자체별 재정 여력에 따라 그 규모가 매우 다름.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2) 재정이관 문제점

일률적 기준으로 의무부담하는 특수보육시책 예산 이관은?

- 서울과 같은 지역은 의무 부담해야하는 재원의 규모가 기존의 특수보육 시책 사업 예산 규모보다 적어, **기존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반면, 다수의 지자체는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부담액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의무 부담이 강행될 경우 다른 부문(예 : 취약아동 지원)의 예산 조정이 일어나 오히려 지역 내 아동 복지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2) 재정이관 문제점

재원 성격은?

- ① 지자체가 분담금 형태로 전출하는 방식 - 지자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일정 부분의 부담금(이관 예산)을 전출하는 형태**
- ② 현행 국고보조금 흐름을 확장한 형태의 이관 방식 - **현행 국고보조금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되 사업 수행주체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하는 방안**
- ③ 지자체-교육청 공동사업비 형태의 이관

2) 재정이관 문제점

	장점	단점
1안 : 현행과 같이 시군구에서 예산수립(또는 분담금 전출)	단기적으로 신속 이관 가능	지자체가 예산을 수립할 근거가 없음
2안 : 시군구 예산미수립에 따른 교육청 교부금 증액	안정적 자원 확보가 가능	단기적으로 유보통합 어려움. 교부금 증액 불확실
3안 : 공동사업비(비법정전출금) 방식운영	일정기간 재정문제 해소 가능	새로운 운영방식이며, 재정불안정 위험성 높음

출처: 김이배(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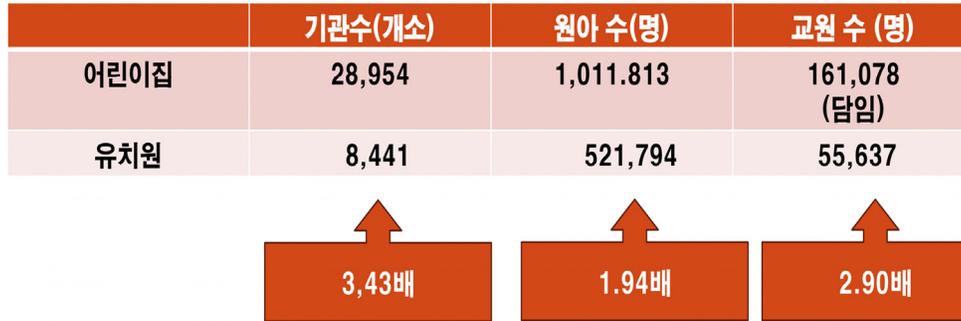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26



4. 서울시 교육/보육 현황

1)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출처: 2023년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2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B011



28

1) 서울시 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출처: 2023년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2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B011



29

2) 전국 어린이집 유형별 분포

국공립 비율
21.4%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8,954 (개소)	6,187	1,206	551	8,886	10,692	124	1,308

출처: 2023년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24).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2) 서울시 어린이집 유형별 분포

국공립 비율
41.4%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4,431 (개소)	1,836	18	75	912	1,258	25	307

출처: 2023년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24).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2024년 서울시 보육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24년 예산액(예산현액) : 2조 1,213억원

(국비 7,977억원 + 시비 1조 3,236억원)

국비 37.6% 시비 62.4%

➢ 이 중 특수시책사업비 예산은 3,223억원(322,302,60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5.2%를 차지함

·집행액(' 24. 7월말 기준) : 1조 3,637억여원(집행률 64.3%)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2024년 예산현액)													비고
	합계	국비	시비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외 지원		
				공통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협동	직장			
합계	2,121,308,216	797,713,239	1,323,594,977	1,104,140,497	383,910,336	3,371,500	0	0	0	0	0	629,885,88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34,869,970	-	34,869,970	34,869,970	-	-	-	-	-	-	-	-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63,009,656	126,258,600	236,751,056	-	363,009,656	-	-	-	-	-	-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포함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22,660,874	6,049,890	16,610,984	22,660,874	-	-	-	-	-	-	-	-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자체)	1,532,365	-	1,532,365	1,532,365	-	-	-	-	-	-	-	-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90,464,929	34,353,770	56,111,159	90,464,929	-	-	-	-	-	-	-	-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자체)	28,054,362	-	28,054,362	28,054,362	-	-	-	-	-	-	-	-	-	
가정양육수당 지원	36,866,085	19,867,950	16,998,135	-	-	-	-	-	-	-	-	36,866,085	-	
영유아 보육료 지원	489,220,467	263,486,729	225,733,738	489,220,467	-	-	-	-	-	-	-	-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95,078,120	-	195,078,120	195,078,120	-	-	-	-	-	-	-	-	-	
통합보육 지원(자체)	54,904,335	-	54,904,335	54,904,335	-	-	-	-	-	-	-	-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244,611	-	2,244,611	-	-	-	-	-	-	-	-	2,244,611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4,459,933	-	4,459,933	-	-	-	-	-	-	-	-	4,459,933	-	
어린이집 비상보험 지원	1,020,355	-	1,020,355	1,020,355	-	-	-	-	-	-	-	-	-	
보육포털사이트 유지관리	138,555	-	138,555	-	-	-	-	-	-	-	-	138,555	-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6,055,555	4,009,000	2,046,555	5,887,335	-	-	-	-	-	-	-	168,220	-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395,000	150,000	245,000	395,000	-	-	-	-	-	-	-	-	-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53,500	-	53,500	-	-	-	-	-	-	-	-	53,500	-	
보육주간 운영	100,000	-	100,000	100,000	-	-	-	-	-	-	-	-	-	
어린이집 공간식비 지원	7,494,049	-	7,494,049	7,494,049	-	-	-	-	-	-	-	-	-	
부모지원 지원	583,423,778	314,420,000	269,003,778	-	-	-	-	-	-	-	-	583,423,778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	1,583,201	-	1,583,201	-	-	-	-	-	-	-	-	1,583,201	-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3,371,500	-	3,371,500	-	-	-	3,371,500	-	-	-	-	-	가정, 협동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818,180	4,514,740	11,303,440	-	15,818,180	-	-	-	-	-	-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생활SOC복합화)	2,264,000	668,000	1,596,000	-	2,264,000	-	-	-	-	-	-	-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지원	948,000	632,000	316,000	-	-	-	-	-	-	-	-	948,000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5,522,476	-	5,522,476	5,522,476	-	-	-	-	-	-	-	-	-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648,798	-	648,798	648,798	-	-	-	-	-	-	-	-	-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2,818,500	1,879,000	939,500	-	2,818,500	-	-	-	-	-	-	-	-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집행액 (2024년 7월말기준)											
	집행액	국비	시비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외 지원
				공통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활동	직장	
합계	1,363,757,022	518,054,029	845,702,993	679,501,372	224,505,462	2,715,461	0	0	0	0	0	457,034,727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20,737,069	-	20,737,069	20,737,069	-	-	-	-	-	-	-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11,755,601	73,650,845	138,104,756	-	211,755,601	-	-	-	-	-	-	-
어린이집 당제교사 지원	14,384,343	1,870,414	12,513,929	14,384,343	-	-	-	-	-	-	-	-
어린이집 다제교사 지원(자체)	1,185,114	-	1,185,114	1,185,114	-	-	-	-	-	-	-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52,695,984	20,011,133	32,684,851	52,695,984	-	-	-	-	-	-	-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자체)	16,330,808	-	16,330,808	16,330,808	-	-	-	-	-	-	-	-
가정양육수당 지원	22,698,027	12,232,461	10,465,566	-	-	-	-	-	-	-	-	22,698,027
영유아 보육료 지원	299,339,284	161,224,169	138,115,115	299,339,284	-	-	-	-	-	-	-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2,216,210	-	122,216,210	122,216,210	-	-	-	-	-	-	-	-
통학보육 지원(자체)	36,774,575	-	36,774,575	36,774,575	-	-	-	-	-	-	-	-
시 유아돌봄지원센터 운영	1,757,406	-	1,757,406	-	-	-	-	-	-	-	-	1,757,406
자치구 유아돌봄지원센터 운영지원	3,462,806	-	3,462,806	-	-	-	-	-	-	-	-	3,462,806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1,020,230	-	1,020,230	1,020,230	-	-	-	-	-	-	-	-
보육포탈사이트 유지관리	55,000	-	55,000	-	-	-	-	-	-	-	-	55,000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4,464,676	2,891,130	1,573,546	4,336,695	-	-	-	-	-	-	-	127,981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315,220	119,630	195,590	315,220	-	-	-	-	-	-	-	-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41,000	-	41,000	-	-	-	-	-	-	-	-	41,000
보육주간 운영	-	-	-	-	-	-	-	-	-	-	-	-
어린이집 공간식비 지원	4,423,520	-	4,423,520	4,423,520	-	-	-	-	-	-	-	-
부모급여 지원	427,304,135	230,283,664	197,020,471	-	-	-	-	-	-	-	-	427,304,135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	1,195,372	-	1,195,372	-	-	-	-	-	-	-	-	1,195,372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2,715,461	-	2,715,461	-	-	2,715,461	-	-	-	-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9,600,130	2,164,619	7,435,511	-	9,600,130	-	-	-	-	-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생활SOC복합화)	2,264,000	668,000	1,596,000	-	2,264,000	-	-	-	-	-	-	-
자치구 유아돌봄지원센터 설치지원	393,000	262,000	131,000	-	-	-	-	-	-	-	-	393,000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4,135,470	-	4,135,470	4,135,470	-	-	-	-	-	-	-	-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462,570	-	462,570	462,570	-	-	-	-	-	-	-	-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885,731	-	885,731	-	885,731	-	-	-	-	-	-	-

출처: 2024년 서울시 내부 자료.

34

* 서울시 보육예산 편성 현황 총괄표

- 2024년도 예산기준으로 작성(구비100%)

자치구	사업수	24년 예산 (단위: 백만원)
종로	6	1,658
중구	6	5,668
용산구	4	1,843
성동	17	5,539
광진	16	4,336
동대문	10	2,806
중랑	13	3,049
성북	6	1,859
강북	5	2,180
도봉	7	4,228
노원	13	5,779
은평	15	2,638
서대문	9	4,887
마포	10	4,178
양천	6	1,080
강서	5	2,596
구로	19	3,991
금천	9	5,946
영등포	23	5,210
동작	25	9,425
관악	19	2,766
서초구	7	4,861
강남	4	12,353
송파	11	5,799
강동	7	2,504
총합계	272	107,179.126

출처: 2024년 서울시 내부 자료.

35

2) 서울시 재정이관 문제점

- 2024년도 서울시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은 2024년도 서울시 보육예산 대비 15.2%이며, 서울시 25개구의 보육예산(구비 100%)은 모두 합해서 1,071억원임.
-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나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부주도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국고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고 자체 특수시책에 대해 기초지자체의 예산을 많이 투입함.
-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형 관련 국고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역 육아 인프라 확충 관련 부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김현숙, 김나영, 2020).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36

*국고보조금 보조율

구분	내용	재원 분담비율(%)		
		국비	시비	구비
A그룹	• 사회보장비 지수 20미만, 재정자주도 85이상	25	22.5	52.5
B그룹	• 사회보장비 지수 20~24, 재정자주도 80~84	35	32.5	32.5
C그룹	• 사회보장비 지수 25이상, 재정자주도 80미만	45	38.5	16.5

- 보육돌봄, 어린이집 지원, 보수교육 :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구분	내용	재원 분담비율(%)		
		국비	시비	구비
A그룹	• 사회보장비 지수 20미만, 재정자주도 85이상	10	27	63
B그룹	• 사회보장비 지수 20~24, 재정자주도 80~84	20	40	40
C그룹	• 사회보장비 지수 25이상, 재정자주도 80미만	30	49	21

- 어린이집 기능보강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사회보장비지수와 재정자주도 미적용

출처: 서울시(2024). 2024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37

*서울시 시비 보조사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연번	사업내용	부담비율(%)		비고
		시비	구비	
1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지원	50	50	
2	민간 보육료 차액지원(만3~5세)	70	30	2019.1~
3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지원(법정저소득층)	100	-	
4	어린이집 배상보험 가입 지원	100	-	
5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50	50	
6	시비대체교사(과견), 대체조리원(과견) 인건비	100	-	
7	시비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50	50	
8	종교시설 어린이집 운영 지원	50	50	
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50	50	
10	보육교사 및 보수교육 중식비	50	50	
11	반당 운영비 및 교사 연구 등 역량강화 지원비	50	50	

출처: 서울시(2024). 2024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연번	사업내용	부담비율(%)		비고
		시비	구비	
12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비	50	50	
1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50	50	
14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50	50	
15	장애아어린이집 장애아 교재교구비	50	50	
16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냉난방비	50	50	
17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비	50	50	
18	야간보육 및 휴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시간제 근무교사 인건비 및 근무수당 포함)	50	50	
19	24시간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50	50	2016.10~
20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운영 (인건비 20%, 야간근무수당, 출장비)	50	50	2015.7~
21	365열린 어린이집 지원	100	-	
22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50	50	
23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	100	-	일부 자부담
24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00	-	
25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70	30	
26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50	50	

출처: 서울시(2024). 2024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5.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1) 유보통합 재정 확보 문제점

- 기존 보육예산과 유아교육예산을 합쳐도 유보통합실행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소요 예산에 못 미침. 그 이유는 3-5세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면서 발생하는 추가 교사 인건비, 돌봄시간 추가 인건비, 방과후운영 지원비, 연수비 등이 증액되어 추가 예산이 많이 요구됨. 실제로 유보통합 시범학교의 경우 6개월의 시행기간 동안 1억원 내 재정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영아반과 관련된 비용 지원은 영아반이 3반 이상인 경우 보조교사 1인 지원,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1:3에서 1:2로 조정하는 미미한 지원 밖에 없음. 따라서 영유아 시범학교는 유아반이 많은 기관일수록 더 많은 재정적 혜택을 받게 됨.
- 결국 영아반은 고려하지 않은 유보통합실행계획안으로 볼 수 있음.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 24년 100교 내외(교육청별 최소 6개 내외) → ' 27년까지 총 3,100교
내외로 확대

※ ' 24년 선정 절차 : 교육부 계획 발표 및 교육청 안내(7월) → 선정(8월)
→ 지원(9월)

2024년 100억원 예산 지원
2027년까지 3,100억원 예산 지원

* 영유아시범학교 예산 예시

(단위: 천원)

항목	주요내역	비율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인건비	협력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특수협력강사 인건비 돌봄인력 인건비	48.3%	59.0%	45.5%	30.6%	75.3%
교육보육 운영비	교육과정 학습준비물 교재교구비 연장과정 자유놀이 지원 도서 및 교구 구입비 돌봄과정 자유놀이 지원 도서 및 교구 구입비 이음교육운영비 유아정서심리검사 학부모상담 추가일수 특별강사비 추가일수 급식비	37.6%	32.5%	51.9%	20.1%	22.3%
연구연수비	교사 연수비 학습공동체 비용 여비	2.15%	6.8%	2.61%	6.8%	2.4%
통합교육	언어치료서비스 교사정서지원 프로그램 실행비 부모간담회 운영비		1.7%		22.8%	
	총액	100,000	29,500	99,462	89,759	63,204

1) 유보통합 재정 확보 문제점

- 모든 영유아가 12시간 기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아침과 저녁 돌봄은 필요한 가정만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 비용은 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재정 지출을 합리화해야 함. 방과후 과정 역시 원하는 부모들이 이용하게 하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부담으로 하여 재정 지출을 합리화해야 함.
-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는 좋으나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별도의 사교육은 계속 존재할 것이므로 부모 요구에 따라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게 해야 함. 정규 교육과정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방과후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재 예산 형편으로는 다소 곤란하며, 추후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면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교육/보육 필요량을 구분해야 표준교육/보육비 산정이 보다 정교해지고 국가 책임 한계가 명확해짐.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1) 유보통합 재정 확보 문제점

- 유보통합실행계획안에서 제시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은 3세반 1:13, 4세반 1:16, 5세반 1:18 비율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유보통합 단기, 중기, 장기 시기로 나누어서 비율조정이 요구됨.
- 교사 대 아동비율을 급격히 낮추면 인건비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재정책보가 선행되어야 함.
- 한편으로는 정원 초과 시 보조교사 지원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교사 총원이 4-6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 채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질을 높인다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1) 유보통합 재정 확보 문제점

-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되 궁극적으로는 3세반 1:10, 4세반 1:13, 5세반 1:15를 적용하고 영아반은 0세반 1:2, 1세반 1:3, 2세반 1:5로 나아가야 함.
-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초과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함. 즉 교사 대 아동비율은 준수해야 함.
- 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정원 준수는 의무화해야 하며 반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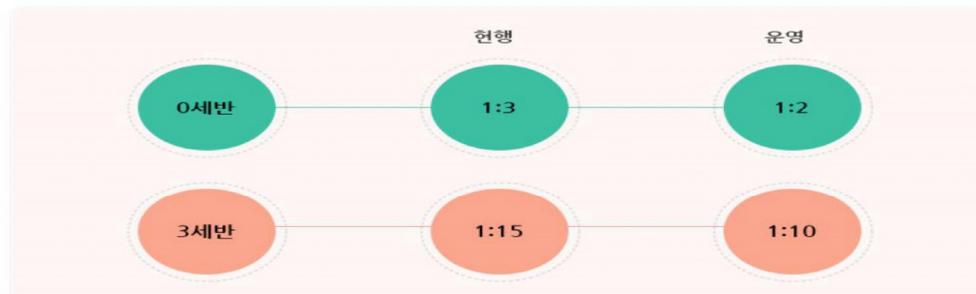
46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수년간 부모와 보육현장의 개선 요구 1순위로, '만 0세 반'은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 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개선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0세 반'은 집중 돌봄이 필요한 나이로 손이 가장 많이 가고, '3세 반'은 교사가 돌봐야 할 아동 수가 직전 반(2세 반 7명)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 0세반과 3세반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출처: <https://iseoul.seoul.go.kr/portal/info/content.do?page=0807>

47

유치원의 학급 당 적정 유아 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

〈표 7〉 연령별 학급당 적정 유아 수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4.8	3.42	19.4	3.30	22.9	3.4	129
직업							
교수	14.4	3.27	19.1	3.60	23.3	3.7	43
장학사	13.7	1.78	18.0	1.93	21.3	2.3	16
유치원 원장	17.1	11.52	21.5	10.79	24.7	10.4	69
유아교육진흥원장	13.8	8.13	18.3	7.72	22.4	7.5	12

자료: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76.

출처: 이재희, 김은설(2017). 이슈페이퍼 2017-04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67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한 전문가 의견

〈표 8〉 영아반 이상직 교사 대 영아 비율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1	0.45	3.7	0.82	5.6	1.10	104
전문가 유형							
교수	2.1	0.48	3.3	0.90	5.0	1.17	29
공무원	2.3	0.45	3.9	0.88	5.9	0.99	10
어린이집 원장	2.1	0.00	3.7	0.67	5.9	0.83	55
육아종합지원센터장	2.0	0.45	3.7	0.82	5.6	1.08	10

자료: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93.

〈표 9〉 유아반 이상직 교사 대 유아 비율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8	2.30	14.5	2.77	16.2	3.01	104
전문가 유형							
교수	9.5	2.06	13.1	2.63	15.3	3.44	29
공무원	9.8	2.39	13.0	3.89	14.4	3.57	10
어린이집 원장	11.4	2.08	15.2	2.29	16.8	2.53	55
육아종합지원센터장	12.3	2.00	16.5	1.86	17.6	2.25	10

자료: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95.

출처: 이재희, 김은설(2017). 이슈페이퍼 2017-04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67-68.



1) 유보통합 재정 확보 문제점

- **아침저녁 돌봄비용,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기 위한 보조교사 채용 인건비, 방과후과정 운영비 등을 정책시급성 차원에서 조정하여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유보통합 예산 범위 내(內)로 유보통합 비용을 줄여서 유보통합 추진의 효율성과 단기적 시행의 용이성을 높여야 함.**
- **정책시급성은 정책이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성, 정책의 효과, 실현가능한 예산 범위(단기, 중기, 장기 구분)를 고려하는 것임.**
-단기, 중기, 장기는 1년/ 2, 3년/5년 이상, 또는 1, 2년/5년/ 10년 이상 등으로 구별할 수 있음.

2) 성공적인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 **성공적인 유보통합은 영아반과 유아반이 똑같이 재정적 혜택을 누리고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함. 이러한 점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상당 부분 수정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유보통합 재정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 **유보통합실행계획안의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 ① **교사 대 아동비율 수정**
 - ② **방과후 연장비용 국가 지원이 아닌 부모부담 & 교육/보육 필요량에 따른 지원금액 차별화**
 - ③ **교사연수 비용은 기관과 국가가 부담**

2) 성공적인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 ① 유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적용하되 궁극적으로 3세반 1:10, 4세반 1:13, 5세반 1:15로, 영아반의 경우 0세반 1:2, 1세반 1:3, 2세반 1:5로 하향화해야 함.
- ② 방과후 연장비용은 부모부담, 모든 유아가 방과후연장반에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모든 기관 12시간 운영은 수정되어야 함. 부모의 교육/보육 필요량에 따라 4시간, 8시간, 12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책정되어야 함.
- ③ 교사 연수 비용은 국가와 기관이 일정 비율 지원하여야 함.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2) 성공적인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 시도·시군구에서 보육 사업을 관리하는 인력의 인건비 예산과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 시 업무에 협력해온 지자체 각 부서 인력의 업무만큼 교육청 업무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교육청 보육업무 관련자 추가 증원은 불가피함.
- 교육청 공무원 중 유아교육 행정담당 인력은 203명, 초등교육 행정인력은 374명임. 반면 시도·시군구의 영유아 보육담당 인력은 1,700명임.
- 영유아 돌봄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교육청은 5,000명의 행정 인력 인건비 부담이 추가되어야 하며, 행정 인력의 업무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매년 5,000~7,0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함 (한만중, 2024.06.05).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2) 성공적인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인력 및 재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보육업무를 빨리 파악해야 함. 특히 영아교육과 관련한 이해가 제고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장학사, 장학관 등 유아교육 전문가 뿐 아니라 기획과 재정 등을 담당하는 일반행정 책임자가 유보통합 업무를 맡아야 하고 보육업무 및 영아보육과 관련하여 교육청 공무원 대상 연수가 필요함.
- 한편으로는 시·도에서 부담했던 보육재정은 일정 기간 현행 유지하되, 이후에는 점차 감액해서 궁극적으로는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이 맡도록 해야 함. 시책사업비는 일정 기간 현행 유지 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유보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에 기반한 재정 투자가 적극 요청되며 이는 유보통합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임.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2) 성공적인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 서울시의 경우 선진보육을 이행해온 선두주자였음. 유보통합으로 인해 보육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서울시 보육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함.
-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가 지금까지 보육사업을 수행해왔던 만큼 잘 해낼지 걱정과 우려, 기대가 교차함. 이는 단지 재정이 확보되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님. 무엇보다 보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성공적인 유보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유보통합 유예기간 동안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기존 보육/유아교육 정책이 잘 유지되도록 하되 이후에는 국고 지원을 증액하여 교육청에서 재정부담을 담당해야 할 것임. 지자체 특수시책비는 지역의 요구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6. 나가며

- 재정책보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정 전입금이나 특례조항을 통해서 현재 각 시·도의 국고 대응 보육 재정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방법론에 해당함.
- 문제는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단순히 기존의 유아교육 예산과 보육예산을 합하고 나머지 일부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임.
- 무엇보다 유보통합실행계획안에서 드러나는 재정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보다 현실적으로 유보통합실행계획안을 수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정확히 산출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함. 이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비용과 지자체 및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음.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6. 나가며

- 시작부터 영아반과 유아반 간 불평등한 재정구조에서 시작하는 유보통합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실수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영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아와 유아 간 교육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재정지출의 합리화와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실행계획안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부분의 상당한 수정이 요구됨. 이를 통해 유보통합 관련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유보통합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참고문헌

- 경향신문(2024.08.27). ‘세계 최고’ ‘세계 최초’ 라면서 유보통합 · 디지털교과서 예산은 아직?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8271605011#c2b>
- 국회예산정책처(2024).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 · 보육 지원사업 평가.
- 김이배(2023). 기초자치단체 유보통합 쟁점과 과제. 기초지방정부 정책 리포트, 10, 1-20.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참고문헌

- 김현숙, 김나영(2020). 지방정부 보육예산 분석: 4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9(4), 149-179.
- 송대현(2024). 정부조직법 통과이후 유보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제언.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9-14.
- 유호송(2024.07.28). 유보통합 첫발 뗐지만..1600명 지자체 보육 인력 교육청 이관부터 난관.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2614201897000>
- 윤근혁(2024.09.24). 기초단체장 100% “교육부방안 반대” ...유보통합 빨간불. 교육언론 창.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0>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참고문헌

- 이정우(2024). 정부조직법 통과이후 유보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제언.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7-20.
- 이재희, 김은설(2017).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 이슈페이퍼 2017-04, 육아정책연구소.
- 최호미(2023). 초기 유보통합 단계에서의 자원 이관에 관한 주요 쟁점. 육아정책연구소.
- 한만중(2024.06.05). 유보통합 국회토론회..."유아중심, 국가책임, 안정적 자원 확보 필수".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91>

- 한치원(2024.06.01). 유보통합 재정은?"교부금법에 법정전입금·특례규정·지자체 특수사업비 이관 근거 필요".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9>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24). 2023년 보육통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연보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B011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보육특별시,
서울의 효과적인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

토론문

김영명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대표 / 서강어린이집 원장

변상범 사랑어린이집 학부모

정안순 예뜨랑어린이집 교사

이정미 호호어린이집 원장

최경화 서울시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안선국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팀장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열쇠 : 시간, 사람, 공간
“서울시 유보통합: 영유아 발달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을 선도한다”

김영명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대표 / 서강어린이집 원장

영유아의 행복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유아에게 시간, 사람, 공간이 제대로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영유아 관련 정책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시간의 양 :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요구 사이에서의 균형

모든 영유아가 12시간 기관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제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필요 무상교육**의 개념을 통해 영유아가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부모의 편리성만이 아니라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을 고려한 이용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6월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는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의 개념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운영시간은 기관의 개방 시간이며, 이용시간은 개별 영유아가 실제로 기관에서 머무는 시간을 의미해야 합니다. 운영시간은 충분해야 하지만, 이용시간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가정의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희망하는 영유아는 누구나 1일 12시간까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편리성만 고려한 것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물론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지만 영유아가 행복하게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는 시간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부모가 바라는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신경가소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 영유아의 뇌 발달을 고려할 때, 개별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한 양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영유아가 기관에서 지내는 시작 연령이 이전보다 빨라지고 있으며,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시간 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시간은 4시까지이며, 그 이후는 영아는 맞벌이 등 가정의 필요를 입증해야 하며, 유아는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연장보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현행 기준도 영유아의 발달권과 행복권을 중시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용시간이 길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는 영유아가 더 오랜 시간 기관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영유아의 권리를 중시하는 뉴질랜드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영유아는 1일 6시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근무 시간 등 반드시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의 필요를 고려하지만 무엇보다 영유아의 발달권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은 과연 누구에게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 시간의 질 : “얼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내느냐”

시간의 문제는 단순히 영유아가 기관에서 머무는 시간의 양뿐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느냐는 시간의 질도** 중요합니다. 2019년부터 개정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어린이집이 점점 더 심화되는 원아모집 경쟁으로 인해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으므로,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허용 연령(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18개월 이상이면 특별활동 가능/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은 없음)과 시간, 가질 수 등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여 이러한 경쟁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이 정착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동의를 다 받아서 외부 강사가 와서 진행하는 것들을 많이 늘려놓은 거죠. 그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은 안도한대요. 우리 아이가 다양한 것들을 배우니까... 그런데 입에다가 밥을 머금고 아직 다 먹지도 않았는데 “빨리 먹어, 빨리 먹어”해서 가서 앉아 있는데... **아기가 밥도 아직 삼키지 못한 채로 체육 수업하는 데가...**

1,2세 영아들이 벌써 11시 20분부터 밥을 먹어서 12시면 벌써 특기 작성을 하고 있어요. 12시 땡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아기들이 막 졸아요. 짜증이 나고 졸면 재워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야 하잖아요. **부모한테 보내는 아기들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교사가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학습적인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자유놀이 시간이 부족하고 **바깥놀이를 요즘 거의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김영명, 2024, 보육지원학회 발표)

2. 사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필요성

영유아의 행복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환경은 **충분한 교사**입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1세 및 2세 반에 보조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유아반의 경우 만 3세는 1:13, 만 4세는 1:16, 만 5세는 1:18을 초과할 경우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 한급에 몇 명까지 배치할 수 있는지 학급 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언급이 없으며 **학급 평균으로 제시한 1:12를 1:8로 한다는 목표는 “평균”이므로 유아가 많은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영유아의 행복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상황은 오늘날의 교육 환경과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사회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비율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표 1〉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안

(단위: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장애아동
교 사	1	1	1	1	1	1	1
영유아(현행)	3	5	7	15	20	20	3
영유아(개선안)	2	3	5	10	13	15	2

현재 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2004년 이후 변화가 없었으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아의 발달권 보장과 양질의 유아 교육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매우 미비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교사의 증원이나 학급당 평균 비율을 낮추는 접근이 아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제시했듯이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유아의 발달권 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는 **[교육부가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영유아가 경험하는 교육의 질이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현재 유치원 만 3세 유아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지역에 따라 1:13에서 1:24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교육부, 2024/유보통합실행계획안). 이는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들이 서로 다른 교육 환경을 경험하게 되어, 차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정책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차별없는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듯이 법령으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차별없는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규정

	유치원	어린이집
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16조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기준 비율	시도 교육청이 정해서 안내함	- 연령별 규정(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취학) - 장애 유무 - 연장보육 * 연령과 상황에 따라 상세하게 규정 * 평가 지표에도 규정되어 있었음

*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 권리 보장 조항

-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 유아교육법의 유아 인권 보장 조항

-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①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차별 없는 공간: 실외놀이터 의무 설치의 중요성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면적 기준을 3.3㎡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실외놀이터 의무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통합기관(가정형 어린이집이나 50인 미만 기관)의 경우, 지역 여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 완화 또는 대체놀이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영유아들이 차별적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말 보육통계에 따르면 **현원이 50인 미만인 경우가 77.9%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라고는 했으나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영유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에게 실외놀이 터는 필수이어야 합니다. 실외놀이 환경이 부재한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는 장시간 실내에 머물며 전반적인 발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외놀이가 자유로운 환경을 가진 기관의 영유아와 비교했을 때 명백한 차별입니다. 유보통합의 기회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실외놀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기본이 마련되지 않은 질적 개선이나 세계 최고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서울의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행복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시간, 사람(교사 대 아동 비율), 공간**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시간 조정,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과 전국 동일 적용, 실외놀이 환경(실외놀이터)의 보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유보통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재정문제입니다. 재정이 문제가 될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발달권과 행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의 토대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현재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보았을 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은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 왔던 실타래를 깔끔하게 정리할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영유아에게 사람과 시간, 공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이 이제까지 부족한 대로 재정을 증가시켜왔고 현장에서 교사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여전히 믿고 맡길 데가 없다고 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보통합을 맞이하여 영유아교육의 기본부터 바로 세우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을 선도해왔던 서울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한다고 하므로 이 과정에서 교사, 부모, 학부모,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제시하여 영유아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영유아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노력에 함께 합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교육부 사이트 → 국민참여 · 민원 → 참여 · 소통 → 유보통합 생각함

<https://url.kr/q6z44q>



토론문

변상범 사랑어린이집 학부모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만1세, 만 2세 자녀를 가정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멋진 토론회장에서 부모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어 떨리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보육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전문가적인 관점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육아에 관심 많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 경험과 느낀 점 위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 우리 부부는 아이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때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첫 아이를 첫돌이 지나며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고 여러 어린이집을 알아보며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의 가정어린이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 예약 후 상담하러 가니 원장님이 남자 분이라는 점이 새로웠고, 원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통과한 서울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원장님께서 부모님이 원하는 최고의 보육은 될까요? 라며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똑같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였고 “우리 아이에게 특별 대접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니 원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길 “부모님, 12개월 아이 3명을 8시간 동안 혼자 양육한다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실까요?”라며 역질문을 하셔서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라고 혼란스러울 때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육교사도 사람인지라 1:3 보육을 하다 보면 보육의 중압감과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서울형어린이집]이다 보니 교사한 분이 0세는 1:2, 1세는 1:3~4, 2세는 1:5~6명을 보육할 수 있으며 한 교실에 선생님이 두 분이 배정되어 보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입소하게 되면 0세 반에 선생님 두 분이 4명의 아이의 일상을 돌봐주시며 교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생님 한 분이 돌보는 아이들의 수를 적게 할 수 있다는 말씀에 안심이 되어 마침 한 아이의 변동으로 인해 바로 입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첫 돌을 지나 2022년 1월에 딸을 입소시켰습니다. 입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잘 적응하고 어린이집에 가는 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면 언제나 웃으시며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부부도 안심하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람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 둘째 아이가 9개월 때 누나와 함께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서 원장님의 권유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1년에 4번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원장님께서 그동안 0세 반을 1:2로 운영하며 영아 1명에 대한 보육료는 포기하였는데 2023년에는 [노원 안심어린이집]에 선정되어 0세 반을 1:2로 운영하면 1명의 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추가 지원된 보육료로 아이들에게 더 좋은 먹거리와 활동 재료를 구입할 수 있으니 좋은 정책이라고 저희 운영위원들에게 안내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그건 어떤 제도인지 질문을 하니 우리 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이고 [노원 안심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과 선생님들의 업무강도를 낮추는 사업이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 우리 큰아이 만 1세 반은 선생님 한 분에 아이들이 4명, 작은아이 만 0세 반은 지속해서 선생님 한 분에 2명을 보육하시더라고요.

귀가하여 집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 “아~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이 지역 맘 카페에서도 입소문이 좋구나, 역시 우리의 선택이 탁월했다. 노원구도 멋지다”라며 웃으며 말을 하길래 저 역시 기분 좋더라고요.

추석 명절 이후 우리 아이를 하원 하는데 원장님께서 이런 토론회 자리가 있는데 토론자로 가능할까요? 라고 여쭙보시길래 일정이 가능할 거 같아 수락 후, 며칠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유보통합하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집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궁금한 점도 있어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 지원 받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 [노원 안심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보니, 이 두 가지는 서울시 시책사업과 노원구의 자체 사업이다 보니 당장은 유지되겠지만 언제까지 유지될지, 어떻게 유지될지 자세한 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업무를 다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뉴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행복한 제도, 어린이집의 좋은 제도, 좋은 지원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문제가 되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주위에 있는 젊은 부부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출산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육아에 대한 책임감 즉, 맞벌이다 보니 출산 후 아기를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를 낳기 전에는 똑같은 생각이었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두 아이의 존재는 우리 부부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젊은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어린 자녀의 보호·교육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훌륭한 시설이 있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은 감사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부모들은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바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은 저희 같은 젊은 부모들에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부모들에게 계속적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서울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보육 지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적, 질적으로 유지, 증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첫째로 생각하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보육특별시 서울**”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정안순 예프랑어린이집 교사

안녕하십니까?

예프랑어린이집 주임교사 정안순입니다.

“서울의 효과적인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동료 교사들과 나누던 생각을 전달하겠다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발제문을 받아보고, 지금까지 3~5세 유아와 0~2세 영아에 대한 재정이 유아교육 재정과 보육재정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과 특수시책도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분리가 유보통합이 어려운 주된 이유였더라구요. 교사로서 저는 교사의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 평가, 장학 등의 문제에만 집중해 왔지만,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재정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정 문제에 관한 부분은 다른 분들이 충분히 논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순수하게 교사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방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현직교사의 자격논의

정부는 현직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학력이 높고 보육교사가 그렇지 않다는 편견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학력이 높아진 만큼 보육교사도 그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간에는 우열을 따지지 않지만,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에는 교직 이수나 전공으로 우열을 가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아와 유아 모두에 전문성이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두 연령대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현장에서도 두 가지 모두 경험해봤죠. 유치원 교사는 영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유치원 교사에게 영아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국가가 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입니다. 현장에는 이미 유아에게 적합한 교사와 영아에게 적합한 교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논의에서 교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예비교사가 아닌 현직교사의 자격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현직교사들, 즉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를 모두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배출될 예비교사들에 대한 교육과정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직교사의 재교육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0세 1:2, 1세 1:4, 2세 1:6, 3세 1:10, 4세 1:14, 5세 1:16으로 아동의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짝수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수준으로 종일 보육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린이집의 4세 반인 노원 안심형 반을 보면, 교사 대 아동 수가 줄어들어 교실 환경이 쾌적해지고 교사의 업무강도도 한결 편안해져 유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 시범학교에서는 0세, 3세~5세만 운영되고 1세와 2세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현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유아기에는 어느 연령도 쉬운 반이 없습니다.

1세 반은 기관 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로, 단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며 대근육 발달 시기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신체 조절 능력이 미숙하여 안전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2세 반은 폭발적인 언어발달 시기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기저귀 떼기를 하는 시기라 교사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유보통합추진단에서는 내년에는 모든 연령을 포함하여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3. 보조교사 지원

발제문에서는 최종적으로 통합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과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누리 보조교사는 3개 반 이상일 때 누리과정 운영비로 채용해야 하며, 정부나 서울시 지원 보조교사는 영아반을 기준으로 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아반 기준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아반과 누리반이 2개 반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예전에 누리반이 4반일 때는 누리 보조교사가 6시간 근무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원아 수가 감소하여 현재는 2개 반으로 줄어들면서 누리 보조교사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해 보니, 원아 수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운영비로 보조교사까지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영아반은 동일 연령으로 두 반씩 있어 협업할 수 있지만, 누리반의 경우는 각각 한 반씩 운영되므로 바깥 놀이 갈 때 돌발 상황에 대비하거나 아이들의 안전을 살펴보기 위해 보조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낮잠 시간에는 낮잠을 자는 유아와 잠을 자지 않는 유아로 나뉘게 되며, 이럴 때도 보조교사가 필요하지만 다른 반의 교사들도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누리반에만 보조교사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경우, 3시에 출근하는 연장반 교사가 1시에 출근하여 누리반 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 유아를 보육하게 되면 원활하고 좋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반 교사도 2시간 추가지원을 적용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사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어린이집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도 할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사업 노원안심어린이집

이정미 호호어린이집 원장

**노원도 할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사업
노원안심어린이집**

이 정 미 (호호어린이집 원장)

1

2021년 11월
전격발표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실현을 위한 -
노원 안심어린이집 선정·운영 추진계획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축소하여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영유아의 놀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보육 품질을 향상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함

**보육실에서 아동을 빼니까
활동 공간이 넓어진다?**



2

2022년 세 부 추 진 계 획

①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방안 (어린이집 필수 이행 조건)

구 분	0세반, 장애아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현행/정부안)	1:3	1:5	1:7	1:15	1:20	1:20
(개선/노원구)	1:2	1:5	1:7	1:12	1:20	1:20

② 노원 안심어린이집 지원(안)

지원사항 : 반 운영비 지원 (보육료 단가 상당금액)

구 분	만0세반	만3세반	장애아반
정 부 지원	490,000원 (1인)	840,000원 (280,000원×3인)	530,000원 (1인)
정 부 미지원	1,060,000원 (1인)	1,350,000원 (450,000원×3인)	-

※ 정부지원: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서울형 민간·가정 / 정부미지원: 일반형 민간·가정
 ※ 장애아반: 장애아 전문·통합 시설 지정 어린이집 (국공립 26개소, 민간2개소)
 ※ 반운영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형태 : 반 운영비 지원
감소 아동의 보육료 상당금액

○ 시설 유형에 관계 없이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 지원, 미지원 차등지원

3

2022년 세 부 추 진 계 획

③ 노원 안심어린이집 모집 · 선정

주요 모집기준

<신청자격>

- (기본사항) 0세반, 장애아반, 3세반 아동비율 축소 어린이집
- (평가 및 평가인증) 정부 평가제 B등급 이상 또는 평가인증 90점 이상
- (정원충족율)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간 정원충족율* 평균 60% 이상
 * 최근3개월: 매월 말일 기준 평균(2021.9월 ~ 11월)
 * 단, 어린이집 소재 행정동별로 지역 여건(아동비율, 어린이집 공급율 등)을 감안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예외 선정 가능
- (행정처분) 신청일 현재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진행 사항이 없는 어린이집

모집 · 선정 절차

모집·신청 안내	어린이집 신청 및 접수	신청 어린이집 심사 및 선정	선정 결과 통보
구형 ⇒ 어린이집	어린이집 ⇒ 구형	구형	구형 ⇒ 선정 어린이집
2021. 12	2021. 12 ~ 2022. 1	2022. 1	2022. 1

○ 사업계획서 제출

신입 원아를 포함한 반 구성을
해보고 안심반 운영이 필요한
반을 선택하여 신청

4

2022년 세 부 추 진 계 획

④ 노원 안심어린이집 운영 기준 및 지원 기준

운영기준

- 1) 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 영유아보육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침
 - 노원 안심어린이집 운영기준
- 2) 1개소당 최대 4개반
 - 0세반: 최대 3개반 / 만3세반: 최대 2개반 / 장애아반: 최대 3개반
- 3) 혼합연령 불가(장애아반 제외)
- 4) 반운영비 지원시설의 경우 총 정원 축소 유지
 -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동의서 제출 (사업 신청시, 필수 제출)
 - 예시① 20명 정원 어린이집이 만0세 2반 운영시 : 총현원 18명
 - 예시② 40명 정원 어린이집이 만3세 2반 운영시 : 총현원 34명
 - 예시③ 40명 정원 어린이집이 장애아반 1반, 만3세 1반 운영시 : 총현원 36명
- 5) 동일 보육실 내 복수반 운영
 - 0세반 : 3개반까지 허용
 - 3세반 : 2개반까지 허용
- 6) 사업 선정 당시 담임교사 배치계획을 사업 운영기간내 반드시 준수
 - 사업 참여반 담임교사 100% 배치 계획으로 선정된 경우 원장검직으로 변경 불가

○ 감소 인원만큼 정원 축소
활동 공간 확보효과

○ 운영위원회의 동의서 제출
학부모 대상 홍보 효과

○ 원장 검직반 선정 불가
차별논란 (추후에 개선)

5

2022년 세 부 추 진 계 획

■ 지원 기준

- 1) 반운영비 지원
 - 반당 현원 100% 충족시 지원 개시
 - 현원 최소기준 미만시, 감소된 달부터 3개월까지만 지원
 - ▶ 현원 최소기준 : 0세반 및 장애반 2명, 3세반 8명
- 2) 사업기간내 추가 선정 및 지원 가능 (단, 예산 한도 내)
 - 3월 원아모집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 4월~5월 추가 선정 진행
 - (1차 선정) 1월 중 / (추가 선정*) 2022. 4월~5월 중
 - * 단, 예산 소진시 추가 선정 없음

Ⅲ 향후 추진일정

- 사업 계획 수립 및 어린이집 신청 안내 : '21. 12.
- 어린이집 신청 및 접수 : '21. 12. ~ '22. 1.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 : '22. 1월 셋째주
- 선정결과 어린이집 통보 : '22. 1월 말
- 노원안심어린이집 반운영비 지원 : '22. 3. ~ '23. 2.
- 추가 접수 및 선정 : '22. 4. ~ 5.
- 사업운영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 '22. 8. ~

○ 최종 선정(1월)

입소대기 중인 아동에게
알림으로써 주변어린이집으로
아동이 분산되는 효과

6

전연령 확대
시행 발표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실현을 위한 - 2024년 노원안심어린이집 운영 추진 계획

2022년부터 실시한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축소하는 노원안심어린이집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운영하여 보육 품질을 보다 향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전 연령이 모두 가능하다. 😊

7

2024년

I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제20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 사업내용 :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구분	만0세 장애아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교사대아동 비율	1:3 ⇒ 1:2	1:5 ⇒ 1:4	1:7 ⇒ 1:6	1:15 ⇒ 1:12	1:20 ⇒ 1:16	1:20 ⇒ 1:16

- 지원사항 : 반 운영비 지원 (보육료 단가 상당금액)
- 사업대상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민간, 가정어린이집 ※ 직장 제외

<신청기준>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간 정원충족률 평균 60% 이상
 - 정부 평가제 B등급 이상 또는 평가인증 90점 이상
 - 신청일 현재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진행 사항이 없으며, 주요 모집기준의 제외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 ※ 신규 개원 어린이집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준 예외적용

- 사업기간 : '24.03.01. ~ '25.02.28.
※ 2024. 01. ~ 02. : '23년도 기선정시설 운영 및 지원
- 소요예산 : 1,804,500 천원 (전액구비)
※ 2025. 01. ~ 02. : '25년도 예산 편성하여 운영·지원 예정

○ 전체 연령으로 확대

○ 사업기간 : 1년
해마다 달라지는 신입아동의 분포를 반영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반구성 가능

8

2024년

1 대상 연령 확대 계획(안) : 7개반 운영 (전체 연령 확대)

■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안)

구분	0세반, 장애아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현행/정부안)	1:3	1:5	1:7	1:15	1:20	1:20
(개선/노원구)	1:2	1:4	1:6	1:12	1:16	1:16

■ 지원 대상 연차별 확대(안) : 2022년(3개반) → 2023년(5개반) → 2024년(전체반)

구분	2022년(3개반)	2023년(5개반)	2024년~(전체반)
만0세반	○	○	○
만1세반		○	○
만2세반			○
만3세반	○	○	○
만4세반		○	○
만5세반			○
장애아반	○	○	○

2 노원안심어린이집 지원(안)

■ 지원사항 : 반 운영비 지원 (보육료 단가 상당금액)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장애아반
정부 지원	50,000원 (1인)	65,000원 (1인)	30,000원 (1인)	80,000원 (20,000원~3인)	110,000원 (20,000원~4인)	110,000원 (20,000원~4인)	50,000원 (1인)
정부 미지원	110,000원 (1인)	70,000원 (1인)	50,000원 (1인)	140,000원 (40,000원~3인)	180,000원 (40,000원~4인)	180,000원 (40,000원~4인)	-

- ※ 정부지원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서울형 민간·가정 / 정부미지원 일반형 민간·가정
- ※ 장애아반 장애아 전문·통합 시설 지정 어린이집 (국공립 25개소, 민간2개소)
- ※ 반운영비는 2024년 보육료 지원 단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반 운영비는 보육료가 인상되는 만큼 인상하여 지급

9

2024년

4 노원안심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기준

▣ 운영기준

- 1) 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 영유아보육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침
 - 노원 안심어린이집 운영기준
- 2) **혼합연령 불가**(장애아반 제외), 동일 보육실 내 동일 연령만 구성
- 3) 사업 참여시, 대상 연령은 모두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
- 4) **반운영비 지원시설의 경우 총 현원 축소 유지**
 - 예시① 20명 정원 어린이집이 만1세 1반 운영시 : 총현원 19명
 - 예시② 40명 정원 어린이집이 만4세 1반 운영시 : 총현원 36명
 - 예시③ 50명 정원 어린이집이 장애반 1반, 만0세 1반 운영시 : 총현원 48명
- 5) 동일 보육실 내 복수반 운영 (단, 동일 연령만 구성)
 - 만0세반 : 3개반 까지 허용
 - 만1~5세반 : 2개반 까지 허용
- 6) 노원안심어린이집 선정 유예기간 적용 (반 현원 미충족 상황 고려)
 - 유예기간 : '24년 3월 ~ 5월
 - ▶ 유예기간 동안 반운영비 미지원 (※현원 100% 충족시 지원 개시)
 - 단, 유예기간 중에도 노원안심어린이집 운영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
 - 유예기간 경과시, 반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하여 선정 종료 검토

○ **혼합연령 불가**
현재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

○ **선정 유예기간**
선정이후에 생기는 변동으로 인해 최초 지원 현원이 미충족 되는 상황을 고려한 유예기간

10

2024년

▣ 지원 기준

- 1) 1개소당 최대 지원 기준
 - 영아반(만0~2세), 유아반(만3~5세), 장애아반만 운영시
 - ▶ **최대 3개반 지원**[동일 연령 2개반까지 지원(장애아반 제외)]
 - 영아반(만0~2세), 유아반(만3~5세), 장애아반 동시 운영시
 - ▶ **최대 4개반 지원**[동일 연령 2개반까지 지원(장애아반 제외)]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및 현원 40인 이상의 영아전문어린이집
 - ▶ **최대4개반 지원**

※ 단, 사업 신청 현황 및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대 지원 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 2) 반운영비 지원
 - 지원 개시 : 반당 11일 이상 현원 100% 충족시
 - ▶ 만0세반 및 장애아반 : 2명 ▶ 만1세반 : 4명 ▶ 만2세반 : 6명
 - ▶ 만3세반 : 12명 ▶ 만4~5세반 : 16명
 - ※ 단, 보조금 신청일(15일) 경과 후 충족시 익월 소급
 - 현원 최소기준 미만시 : 감소된 달부터 5개월까지만 지원(총 5개월)
 - ▶ 현원 최소기준 : **0세반 및 장애아반 2명, 1세반 3명, 2세반 5명, 3세반 8명, 4~5세반 12명**
 - ▶ 단, 현원이 없는 경우 : 해당 월부터 반운영비 지원 중단
 - ▶ 예시) 2024. 8월부터 만4세반 현원이 11명인 경우 :
2024. 8월 ~12월까지 반운영비 지원

○ **개소당 최대 지원기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1

노원안심어린이집 운영 사례 피드백

	선정반	반 운영비 지원금	정원
2022	0세 : 1반 3세 : 1반	1,230,000원	44명 ⇨40명
2023	0세 : 3반	1,530,000원	44명 ⇨41명
2024	0세 : 2반 2세 : 1반 3세 : 1반	2,310,000원	44명 ⇨37명

- 아동의 활동 공간 확보
-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 학부모의 당연한 기대
- 지역에서 홍보 효과

노원안심어린이집은 ...

교실에 교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아동을 줄이는 사업이다.**
 처음부터 시범사업이 아니라 3개년 계획을 세워 시작하였고, 3년 차에 마침내 **전 연령으로 확대하였다.**
 이점이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교사 대 아동비를 개선 사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노원에서 100% 구 예산 사업이 부담도 되었지만,
 노원안심어린이집은 원장에게도 쉬운 선택이 아니다.
 자격을 갖추고 신청해도 정해진 예산 때문에 모든 반이 가능하지는 않다.
 지원되는 반이 있는 연령은 모든 반이 안심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월에 선정이 되어도 3월에 최초 시작 인원 기준을 맞춰야 지원이 시작된다. (단,유예기간은 있다)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원장이 중도에 자진 포기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2년 동안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노원안심어린이집을 137개소가 선택한 이유가 있다.
 영유아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교사와 아이들의 양질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육의 질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시설마다 상이한 요구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보육의 질 개선에 대한 노원구청의 의지와 노원구의회 의 예산 승인, 원장의 협력은
 노원구민들이 **“노원구는 안심어린이집이 있는데?”**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

서울시의 보육정책은...

대한민국의 보육정책을 선도해 왔다.

“국공립과 같은”을 표방한 서울형 어린이집은 전국에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게 했고, 기존 민간시설의 전환을 포함한 적극적인 국공립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 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지향하는 각종 정책들은 알차고, 다양하고 그 질도 우수 하다.

다만, 서울시의 예산 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들’은 목적은 같은데 명칭이 다르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등 복잡하다.

‘매년 시범사업이 나오는데 왜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걸까?’

‘0세와 3세 등 전이 연령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범사업과 지속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1, 2세와 4, 5세는 왜 시범사업조차 적용되지 않는 걸까?’

‘내년에는 4명이죠?’ 0세반 부모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제시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컸다.

‘유보통합이 되면’이라 했는데 유보통합은 정부가 발표를 했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기엔 정책이 준비중인 사이에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어린이집에서 생활한다.

그래서 서울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특별시, 서울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개선이 보육의 질 향상에 효과적임은 이미 확인되었다.

이제 보육특별시 서울은 빠른 시일내에 **전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할 일만 남았다.